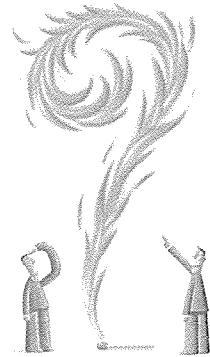


## 양돈협회 양돈농가 상담 코너

작년 본회에서 2005년부터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농가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를 상담건수 중 주요 사안을 선별하여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 주 –



◎ 상담사례 1 : 경북 문경에서 문의한 내용으로, 본 양돈가는 농지전용 협약이 나지 않은 농지에 400 톤 규모의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려고 콘리리트와 철구조물을 어느 정도 올린상태이다. 하지만 문경시 농정과 담당자는 농지법상 간이액비저장조라고 명기되어 있어 현재 시공중인 액비저장조와는 틀리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2006년 1월 21일 농지법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액비저장조를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때는 농지의 이용으로 보아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발행위 신고는 해야하며 규모가 150 톤 이하여야 한다.〉 양돈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 자연순환팀에 자문을 구한 후 본 농가에 간이액비저장조와 액비저장조는 문구의 차이일 뿐이며, 농지전용 완화와 관련하여 액비저장조에 관해 관대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돈협회에서는 이와같은 농림부의 회신을 문경시 농정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이해를 구하고 원만한 액비저장조 설치협조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

◎ 상담사례 2 : 충남 부여에서 문의한 내용으로 지역해양경찰서에서 해양배출농가에게 오는 9월 23일 까지 고액분리기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해양배출이 안되니까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본 농가에서는 2007년에 고액분리기 설치 지원을 해서 내년에 고액분리기를 농림부 지금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음으로 올해 설치하고 내년에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해양배출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과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고액분리기가 아니더라도 시설 및 기술로 돼지 분뇨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고액분리기와 관련하여 내년도 사업 배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올해에 설치하고 내년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도부에서는 밝히고 농림부에 고액분리기 선 시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양돈농가 상담코너 – 양돈농기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양돈협회에서 상담해 드리고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 :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전화 : 02-581-9751~4, 팩스 : 02-581-9768>